

□ 회원종목단체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9조(회장 선출기구)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,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(지도자는 제외한다), 지도자, 심판, 동호인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도자, 심판, 동호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. <개정 2022. 12. 26.></p> <p>④ “생략” [전문개정 2018. 12. 20.]</p>	<p>제19조(회장 선출기구)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<u>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하고자 하는</u>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<u>승인을 받아야 한다</u>. <개정 2024. 00. 00.></p> <p>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하고자 하는 회원종목단체는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,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(지도자는 제외한다), 지도자, 심판, 동호인 등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도자, 심판, 동호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. <개정 2022. 12. 26., 개정 2024. 00. 00.></p> <p>④ “현행과 같음” [전문개정 2018. 12. 20.]</p>	<p>[규정 명확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체육회 내 심사, 심사결과 공고 등 절차 간소화 <p>[규정 명확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수였던 사람(지도자는 제외한다.)은 제외
<p>제19조의3(당선인 결정) ①~② “생략”</p> <p>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21. 10. 6., 개정 2024. 00. 00.></p> <p>[본조신설 2018. 12. 20.]</p>	<p>제19조의3(당선인 결정) ①~②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, 선거 <u>운영</u>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<개정 2021. 10. 6., 개정 2024. 00. 00.></p> <p>[본조신설 2018. 12. 20.]</p>	<p>[자구수정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거관리위원회 → 선거운영위원회
<p>제20조(선거의 중립성) ①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회원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선거의 중립성) ① 회원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회원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 <u>운영</u>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00.</p>	<p>[자구수정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거관리위원회 → 선거운영위원회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②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20., 2021. 10. 6.></p> <p>1.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2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,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,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3.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(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4.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,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.</p> <p>③~⑤ “생략”</p>	<p>00.></p> <p>② 회원종목단체가 직접 선거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20., 2021. 10. 6., 2024. 00. 00.></p> <p>1.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</p> <p>2.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,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,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00. 00.></p> <p>3.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(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)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4.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, 회원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.</p> <p>③~⑤ “현행과 같음”</p>	<p>원회 [자구수정] ▪ 선거관리위원회→선거운영위원회</p> <p>[자구수정] ▪ 선거관리위원회→선거운영위원회</p> <p>[자구수정] ▪ 선거관리위원회→선거운영위원회</p>
<p>제21조(회장의 직무대행) ①~③ “생략”</p> <p>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3., 2018. 4. 25.></p> <p>⑤ “생략”</p>	<p>제21조(회장의 직무대행) ①~③ “현행과 같음.”</p> <p>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3., 2018. 4. 25., 2024. 11. 00.></p> <p>⑤ “현행과 같음.”</p>	<p>[규정 명확화] ▪ ‘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’ 삭제 ▪ 잔여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필요할 것임.</p>
<p>제25조(임원의 임기) ① “생략”</p> <p>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,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9. 11. 7., 2022. 12. 26.></p>	<p>제25조(임원의 임기) ①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,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9. 11. 7., 2022. 12. 26.></p>	<p>[규정 명확화]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1.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. 다만,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한다.</p> <p>2.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시작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장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한다.</p> <p>③~⑥ “생략”</p>	<p>1.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첫번째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. 다만,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인준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한다. <개정 2024. 00. 00.></p> <p>2. 부회장 및 이사는 선임된 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장에게 선임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선임한 날에 임기가 시작한다. <개정 2024. 00. 00.></p> <p>③~⑥ “현행과 같음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기의 종료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(정관 준용)
<p>제33조(임원인준 등) ①~③ “생략”</p> <p>④ 시도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 위임을 받아 시도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,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“생략”</p>	<p>제33조(회장인준 등) ①~③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④ 시도체육회의 사무처장은 이사회 의 위임을 받아 시도종목단체의 회장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,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00. 00.></p> <p>⑤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<제목개정 2024. 00. 00.></p>	<p>[자구수정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원→회장 <p>[자구수정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원→회장
<p>제37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, 경기력향상위원회, 선수위원회, 심판위원회,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.</p> <p>② 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③~⑤ “생략”</p>	<p>제37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, 경기력향상위원회, 선수위원회, 심판위원회, 생활체육위원회 등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00. 00.></p> <p>② “삭제” <2024. 00. 00.></p> <p>③~⑤ “현행과 같음”</p>	<p>[규정 명확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문 또는 생활체육 등 단체의 특성에 따라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종위원회에 대해 자율적 운영토록 개정
<p>제56조(경영공시)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, 예산집행내역,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, 외부평가, 감사결과와 그</p>	<p>제56조(경영공시)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,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00. 00.></p>	<p>[규정 명확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영공시의 목적 추가하여 명시 ■ 변경사항 발생시마다 공시할 수 있도록 개정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7. 3. 23., 2019. 5. 29.></p>	<p>② 제1항에 따른 공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사회 및 총회 결과 2. 예산 집행내역(예·결산서) 3.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4. 외부평가 결과 5. 감사 보고서 6. 외부기관의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(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.) 7. 임원 및 직원 현황 8. 정관 및 각종 제규정 9.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징계 현황 10.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현황 11. 과실금 집행내역 12. 그 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 <개정 2017. 3. 23., 2019. 5. 29., 2024. 00. 00.> 	<p>[공시 항목 추가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감사 보고서 및 결과, 임원 및 직원 현황, 정관 및 각종 제규정, 징계현황, 법인화 기금 및 경기력지원비 적립금 현황, 과실금 집행내역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2024.00.00.)</p> <p>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,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</p>	